

第 4 分科討論要旨

崔 載 勳*

제 4 분과에서는 國際法上的 環境公害問題에 관한 제목으로 盧明濬교수(韓國外國語大)가 發表를 하고 이어서 朴鍾聲교수(檀國大)와 池楨日교수(서울大 講師)가 指定된 討論者로서 討論에 참가하였다. 우선 盧明濬교수가 發表한 것을 몇가지 條目으로 나누어서 결론적인 것만 整理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環境汚染을 防止하는 데는 國內의인 勞力만으로써는 不充分하며 各種의 公害를 防止하고 人間生活의 環境을 保護하는데 있어서는 國家와 國家間의 國際社會에 있어서는 國際的인 規制와 國家間의 協力이 아울러 필요하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둘째로, 이 國際法上的의 環境公害의 문제와 關係에서 「國際環境法」이라고 하는 用語를 사용하면서 國際環境法이라고 하는 國際法의 한 特殊部門이 이제는 벌써 거의 體系의으로 理論이 整備되어 있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세번째로, 實際的인 問題로서 그것을 어떻게 理論構成을 해 나가느냐하는 문제에 있어서 盧교수는 우선 慣習國際法에서 이 國際環境法の 확립에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에 關係해서 分析을 하였다. 즉 종래의 慣習國際法에 있어서 이른바 國家責任의 理論 혹은 領土主權의 理論, 혹은 公海自由의 原則 등을 기초로 해서 慣習國際法에 의해서 環境保全을 위해서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形成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內容의으로 微弱하고 또 合理性의 基準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基準밖에 提示하지 못하기 때문에 國際環境法の 確立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역할을 함에 그친다고 하였다. 네번째로, 公害의 規制를 위해서는 그러한 先驗的인 規則과 基準은 個個의 구체적인 例에서 設定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慣習國際法보다는 條約國際法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다섯번째로는, 이러한 國際法上的의 環境公害問題를 위한 측면에서 보면 國家間의 利害가 相衝함으로 인해서 광범하고 포괄적인 國際條約이 성립된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여섯번째로, 구체적인 汚染防止義務를 강제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超國家的인 制度를 國際條約이 創設한다고 하는 것은 現段階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문제이나 다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UN을 위시하여 많은 多邊的인 國際機構들이 環境公害問題의 解決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고 기여하고 있는 그 內容에 關係해서 例示・說明하였다. 이어서 일곱번째로, 그러

* 第 4 分科討論 司會者, 釜山大學校 法政大學 教授(同行政大學院長)

한 超國家的인 地域機構에 의한 規制의 例示로서 西歐羅巴에 있는 組織을 例로 들어서 類似的한 政治制度나 經濟水準이나 生活樣式을 가진 地域的인 機構가 全世界를 망라하는 多邊的인 機構보다 環境公害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는 더 効果적인 制度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는데 盧교수는 多邊的인 國際機構에 의한 活動보다는 地域的인 機構에 의한 勞力을 높이 評價한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公害防止基準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이 결국은 國際社會에 있어서의 각 主權國家들에게 맡겨져 있으나 이러한 主權國家라고 하는 것은 自己中心인 利己主義라든지 등의 편협한 眼目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主權國家들의 힘만 가지고서는 環境保護라고 하는 汎世界的인 課業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각도에서도 보다 實效性이 있는 國際環境法の 確立이 現단계에서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면서 結論을 맺었다.

이러한 盧교수의 發表에 대해서 朴鍾麟教授는 海洋環境의 現況과 法的 規制에 관해서 거의 완벽하게 體系화된 發表였다고 높이 評價하였는 바 討論過程에서 몇가지 지적된 點만을 간추려보면, 國際法上的 環境公害에 관한 問題에서는 아무래도 地球表面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海洋의 汚染問題에 크게 비중이 놓인다 하는 점에 거의 意見이 일치되었고, 그러한 海洋汚染을 防止하고 海洋環境을 保存하는 문제는 결국은 人類가 地球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기어이 달성하지 않으면 안될 심각한 문제이며 다만 이러한 海洋汚染防止問題에 관해서 종래처럼 海洋에 있어서의 Pollution의 防止라고 하는 消極的인 次元에서가 아니라 보다 더 積極的으로 깨끗한 海洋環境을 保存한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討論過程에서 지적되었다.

특히 池植日교수는 앞서 發表者의 세번째와 네번째의 問題點에 관해서, 國濟環境法을 理論構成하는데 있어서 發表者는 慣習國際法을 조금 소홀히 評價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現재의 傾向을 보면 國際法上에 環境汚染問題에 대하여 大개 條約을 통해서 規制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條約이라든지 宣言 등(예를 들면 Helsinki Principle, Stockholm Declaration)을 보게 되면 注目할만한 內容들이 많으나 사실상 그 條約을 適用·強制하여 汚染을 防止할 수 있는 救濟手段이 充分하지 못하므로 慣習國際法 자체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時間이 많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慣習國際法에 의한 理論形成이 될 수 있다는 可能性을 말하였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하나의 論難의 對象이 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또 한가지 池植日교수는 國際環境汚染問題에 있어서 現재까지의 Case Law 등을 檢討해 보면 그 發展方向이 國家責任(State Liability)의 理論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國家가 직접 關與되지 아니하고 다만 個人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國家의 責任은 State Liability라기 보다는 due diligence(적절한 注意)가 된다는 難點이 있으며 私企業部門(Private Industry Sector)에서도 國際環境汚染問題에 대해서 協力을 하여야 効果적인 救濟·補償이 이루어질 수 있다

는 것을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強調하였다.

海洋汚染問題에 관해서는 目下 거의 매듭을 지어가고 있는 제 3 차 海洋法會議에서 刮目할만한 成果가 나와 있지만 時間關係로 그 具體的인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